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20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김영진·허 영·강유정

임호선 · 서삼석 · 안도걸

소병훈 • 이병진 • 윤후덕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 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2
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u>2025년</u>	<u>2027년</u>
<u>12월 31일</u> 까지 해당 과세기간	<u>12월 31일</u>
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	
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	
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	
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	·
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한다.

1. • 2. (생략)

④ ~ ① (생 략)

③
<u>2027</u>
년 12월 31일
<u>.</u>
1.•2.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